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운영규정 일부 사항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복지가 수탁 운영하는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이하 ‘요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업무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① 시설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노인요양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대상노인 가족의 고통을 경감한다.
2.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로 입소자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
3. 지역사회에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4.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5.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를 구축한다.

제3조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본 시설의 운영주체인 함께하는복지의 규정, 지침서 등을 준용한다.

제4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요청에 의하여 발의되며,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의결한다.

제2장 입소자 보호 관리

제5조 (입소대상자 기준)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며,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시 시설은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소절차) ①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소순서 및 대기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퇴소한 자가 다시 입소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2. 입소 연기는 1회 가능하며, 입소연기 1회 후 2회째 다시 입소연기를 하게 되면 입소 연기를 표명한 일자에 재신청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연락처 변경, 장기간 부재 상황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대기자 명부에서 자동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은 114명으로 하며,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

3. 입소자 모집방법은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하며 입소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기관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 2)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 3) 상담 : 전화/인터넷 상담 후 방문
- 4) 기존 입소자의 지인 소개

제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요건, 퇴소, 면회, 외출외박,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할 경우
-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제9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별표 4. 참조)

④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써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서비스 비용의 부담

센터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 비용, 강사비, 이미용비, 피복비 등 모든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 제9조 1,2항을 제외하고 모두 센터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

(임종요양, 심각한 행동장애)를 필요로 하는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즉시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의뢰 혹은 입원을 시키거나 특별요양실을 사용한다.

②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규정 제9조에 따르며, 자체 기관을 이용시는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2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계약의사 및 일반의사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협력의료기관이나 입소자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③ 의료기관 입원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외박수가를 적용한다.

④ 구체적 처리절차는 보호자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과 입소자·보호자의 실수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기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 제공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5조 (입·퇴소 심사) ① 시설은 다음의 경우 입·퇴소심사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필요시
② 회의의 의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총무과장, 복지과장, 간호과장, 재활과장, 영양사, 요양팀장 등으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6조 (퇴소 등) ① 시설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 퇴소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장기입원, 외박 등의 상황으로 1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2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에게 외박기간 일수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50%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장기입원, 외박 등의 상황이 30일이 경과 되었을 경우 계약해지 및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퇴소 후 이용자는 요양원과 우선 입소 관련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 (연계조치) 시설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제18조 (보호자간담회) ① 시설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자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간담회는 입소자의 보호자들과 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복지과장, 간호과장,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연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입소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④ 시설은 보호자간담회에서 토의된 입소자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입소자 처우) ①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 상담, 영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시설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및 영양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입소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입소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② 가능한 입소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입소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입소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소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입소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입소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처리한다.

⑦ 입소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된다.

⑧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서비스 제공 도중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선 순위에 맞게 응급처

치를 실시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계약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제21조 (시설표준서비스 제공) 입소자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은 장기요양시설급여제공매뉴얼에 따른다.

제22조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입소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자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건강진단 및 관리) ①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구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 의사 중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급식위생관리) ① 시설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 식단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식품수불 및 주·부식 구매절차는 나라장터 입찰에 의하여 계약, 구매발주, 검수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시설에서의 기거자) ① 시설은 시설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또는 기타 직원을 24시간 배치한다.

② 시설 내에는 입소자 및 그 가족, 직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제26조 (장례절차) ① 입소자 사망 후 시신은 장례식장에 안치하며, 시신처리는 사망 24시간 이내에 유족과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유족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조치한다.

제27조 (유류금품 처리) 무연고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고충처리함 설치) 시설은 입소자의 진정 및 건의 등 고충처리를 위하여 진정함을 설치하고, 입소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